

의안번호	2201284
의 퇴 인	한창민의원
회 답 일	2024.07.31.
추계번호	24C0464

저출생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¹⁾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3조 (저출생·고령사회 위원회)	- 위원회는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,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 - 현행법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	재량규정
2	안 제23조의3 (시·도 저출생·고 령사회위원회)	- 시·도지사는 관할 시·도의 저출생·고령사회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저출생·고령사회정책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시·도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를 둠(제1항) - 시·도지사는 시·도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 소속으로 시·도 인구정책기획단을 둠(제2항) - 시·도위원회와 시·도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함(제3항)	의무규정
3	안 제32조(지원)	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3조 (저출생·고령사회 위원회)	각 기관의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 대상에서 제외
2	안 제23조의3 (시·도 저출생·고 령사회위원회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32조(지원)	

1) 개정안 제안이유에 따르면, 개정안은 생물학적 용어인 '저출산'을 출생인구 감소라는 현상을 의미하는 중립적 언어인 '저출생'으로 대체하고자 함. 따라서 법률명을 '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'에서 '저출생·고령사회기본법'으로 하고, 조문 내 '저출산' 용어를 '저출생'으로 개정함

2. 상세 사유

□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(안 제23조)

- 개정안은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 위원 정원을 현행 25인에서 30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으로 민간위원의 수당 지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그러나, 개정안은 안 제23조제4항제2호 신설을 통해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른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‘지방자치단체의 장’을 위원에 포함하려는 취지이므로 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는 민간위원 위촉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
 - － 현재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위원(당연직) 8인과 민간위원(위촉직) 15인 등 총 23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2023년 1년간 본회의 3회, 소위원회 14회²⁾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에게 회의 당 15만원을 지급함
 - － 개정안은 위원 정수 증원에 따른 민간위원 증원 수를 정확하게 명시하지는 않았으나,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 수당 지급이 증가하더라도 이는 위원회 기본경비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□ 시·도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(안 제23조의3)

- 개정안에 따라 시·도 저출생·고령사회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시·도 소속의 인구정책기획단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시점에 위원회의 규모와 구성, 비용 발생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움
 - － 개정안은 시·도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각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
 - － 참고로, 현 대통령직속 저출산·고령사회위원회의 인구정책기획단은 위원회 상임위원과 기획재정부 1차관 및 보건복지부 1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, 유관 정부 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이 각 정책 분과 및 작업반을 맡고 있음

□ 지원(안 제32조)

-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사업수행실적이 우수한 기관, 단체 등에 포상 및 재정지원을 할 경우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, 구체적인 포상과 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2) 소위원회장 회의 2회, 일생활도봄 소위원회 4회, 백세사회 소위원회 3회, 미래전략 소위원회 5회 개최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작성자

-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-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